#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(안)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-2호('20.01.07.)호로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고, 지구지정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착오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상안 행복주택 공동주택지구
나. 사업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43번지 일원
다. 시 행 자 : 울산광역시도시공사
라. 사업면적 : 9,823㎡
마. 사업기간 : 2017년 ~ 2022년

## 2. 보상대상

가. 토지 :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

| 소재지 | 대 상 지 번 |
|---|---|
| 상안동 | 341, 342, 343, 344, 345, 346, 348, 348-1, 349, 350, 351, 352-1, 355-8, 355-18, 355-21, 356-1, 356-3, 356-5, 358-44, 358-52, 358-53, 1210-1, 1210-24 |

※ 상기 보상대상 지번은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※ 보상대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고 없이 개별통지로 갈음함.

나. 물건 :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소재한 물건 등 보상대상 일체
※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와 함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및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도 확인 가능

## 3. 열람 및 이의신청

**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0. 05. 13. ~ 2020. 05. 27.**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)
나. 열람장소
-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 (☎ 052-219-8475~6)
-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(☎ 052-241-7913)

다. 열람 시간 : 09시 ~ 18시 (점심시간 제외 : 12시 ~ 13시)
라. 열람 내용 :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
**마. 이의 신청 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**
**※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이후 신청 내용은 신청자가 입증**
**※ 이의신청 내용 :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정정사항**

**4. 보상시기 : 2020년 8월 이후 예정 (추후 개별통보)**

**※ 보상시기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**5. 보상방법 및 절차**

가. 보상액 산정 방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,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,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

※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금번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으로 제출

나. 보상방법

- 현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 : 현금보상 원칙
-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: 1억원까지 현금 지급하고, 1억원 초과분은 채권보상(3년만기)
  (단,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현금 지급 :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보상 협의시 지급요청)

※ 부재부동산 소유자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참조

**6. 기타사항**

가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나. 토지 등의 소유자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,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라. 보상계획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장소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감정평가사 추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열람공고 기간 후(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)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**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(☎ 052-219-8475~6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2020년 05월 13일**
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(직인생략)